

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

우리 지청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대상자에게 시정지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08. 05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- 건 명: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
-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,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 (사업장명)	주소	현장명		과태료 부과예정액	송달 불능 사유	공시송달내용
			미납공제부금				
1	박0규 ((주)도준건설)	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5-1 2층	안강 노당, 산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(총괄분)		-	폐문부재	시정지시
			2026년 3월 공제부금 3,094,000원				

4. 공고기간: 2026.08.05. ~ 2026.08.19.(15일간)

5. 문의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1층 노동기준조사2과 박예린(TEL. 054-271-68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